

## 고용노동부,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

고용노동부 대변인

**육아휴직 급여인상, 사후지급방식 폐지,  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(중요)  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12, 7476)**

-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-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\*하고,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\*\*합니다
  - \* (현행)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%(월 상한 150만원)  
(개편)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(월 상한 250만원), 4~6개월 통상임금 100%(월 상한 200만원),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(월 상한 160만원)
  - \*\* (현행) 육아휴직 중 75% 지급,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 
(개편) 육아휴직 중 100% 전액 지급
-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**250만원**으로 인상됩니다.
  - \* 1개월 상한액은 200→250만원으로 인상, 2~6개월은 현행과 동일(250, 300, 350, 400, 450만원)
- 또한 **한부모 근로자**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**300만원**으로 상향합니다.
  - \* (현행) 1~3개월 상한액 250만원, 이후 150만원  
(개편) 1~3개월 30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
-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'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,

-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%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.

\*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%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

**<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>**

- 추진배경 :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'일·가정 양립 활성화' 추진
- 주요내용
  -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
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(월 통상임금 100%)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
- 시 행 일 : 2025년 1월 1일

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 
일육아지원 제도 확대(중요)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6, 7412, 7471)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남녀고용평등법”）」, 「고용보험법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
- [육아휴직]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
- [배우자 출산휴가]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,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.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,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.
- [난임치료휴가]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,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.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.
- [육아기 근로시간 단축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(초2) 이하에서 12세(초6) 이하로 확대되고,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- [출산전후휴가]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.
  - [임신기 근로시간 단축] 유산·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'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'에서 '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'로 확대됩니다. 특히 조기 진통,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
  - [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]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(법률 제16558호)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,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이러한 「육아지원 3법」 개정내용 시행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, 일·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·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< 「육아지원 3법」 개정 시행 >**

- 추진배경 :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'일·가정 양립 활성화' 추진
- 주요내용
  -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
  -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, 기간, 사용기한,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
  -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
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, 기간, 최소 사용기간 확대
  -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
  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
  -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: 2019. 10. 1. 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
- 시 행 일 : 2025년 2월 23일

「출산육아기 대체인력, 업무분담지원금」 지원확대(중요)  
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(☎ 044-202-7474)

- '25.1월부터 '대체인력지원금'과 '업무분담지원금'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,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.
  - (대체인력지원금) 육아휴직, 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(파견)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
    - \* 대체인력지원금 인상: ('24년) 월 80만원 → ('25년) 월 120만원
  - (업무분담지원금)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기타 “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(예정)”

< 「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, 업무분담지원금」 지원확대 >

- 추진배경 :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,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등
- 주요내용
  - (지원요건) 대체인력지원금,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,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,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
    - ① (대체인력지원금) 육아휴직, 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(파견)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
    - ② (업무분담지원금) 육아휴직,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
  - (지원기간, 주기)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(사용)하거나,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(3개월 단위 신청)
- 시행일 : 2025년 1월1일

**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 확대 개편(중요)**  
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☎ 044-202-7441)

-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
  -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,
  -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,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용장려금,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.

[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]

구분	2024년		2025년	
유형	단일 유형	개편 ⇒	I유형	II유형(신설)
지원업종	모든 업종		모든 업종	빈일자리 업종
대상청년	취업애로청년		취업애로청년	모든 청년
지원기간	2년		1년	2년
사업주지원 (청년1인당)	1,200만원 <2년> *720만원(60만원/월) + 2년차 480만원		720만원 <1년 지원>	720만원 <1년 지원>
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	-		-	480만원 <2년> *18·24개월차 각 240만원
목표인원	12.5만명		5.5만명	4.5만명

**<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Ⅱ 신설 >**

- 추진배경 : “빈일자리 업종”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 사업 확대(개편) 시행
  - \* 제조업, 조선업,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(일자리TF<부처합동> 선정, '23.7.)
- 주요내용
  - 5인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(720만원, 1년),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(480만원, 18·24개월차 각 240만원) 지원
- 시 행 일 : 2025년 1월 1일(예정)

**「상습 임금체불 근절법」 시행(중요)**  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29)

- 「상습 임금체불 근절법(개정 근로기준법)」(24.10.22 공포)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
  - 이 법률이 시행되면,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.
    -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,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  - 또한,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,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  -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100분의 20)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,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(3배 이내의 금액)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.
-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 개정 「근로기준법」

**< 「상습 임금체불 근절법」 (개정 근로기준법) 시행 >**

- 추진배경 :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
- 주요내용
  - 상습체불 사업주\* 신용제재, 정부지원 제한, 공공입찰 불이익
    - \* (상습체불 사업주)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(퇴직금 제외) 또는 ② 5회이상 체불 & 체불총액 3천만원(퇴직금 포함)이상
  -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
  - 체불\*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
    - \*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
- 시행 일 : 2025년 10월 23일



##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(중요)

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(☎ 044-202-8891)

- 2024년 10월 22일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‘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’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.
  -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,
  - ‘폭염’을 근로자의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,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.
-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, 노·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건설, 물류,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### <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명확화>

- 추진배경 :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 폭넓은 보호
- 주요내용
  -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
- 시 행 일 : 2025년 6월 1일

## ‘중장년 경력지원제’ 신설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59)

-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‘중장년 경력지원제’를 신설하여 중장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합니다.
-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~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,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또한,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, 공조기능사,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(참여자 1인당)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<‘중장년 경력지원제’ 신설>

- 추진배경 :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
- 주요내용
  - (참여요건)
    - (참여자) ①50대 이상, ②사무직 등 퇴직자로 경력전환 희망자, ③자격취득(또는 훈련)을 거친 사람으로서 경력쌓기가 필요한 자
   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
  - (지원내용)
    - (참여자)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
    - (참여기업)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
- 시 행 일 :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모집공고 '25년 초 시행 예정

##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'도약지원형' 신설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5)

- 장애인 표준사업장\*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'도약지원형'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.

\*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,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 받은 사업장

-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(한도 10억)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또한,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당 1명에서 4천만원당 1명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.

### <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'도약지원형' 신설>

- 추진배경 :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 지원
- 주요내용
  -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- 시행일 :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'25년 초 시행 예정

##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

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(☎ 044-202-7318)

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\*하고 있습니다.

\* 기본 계좌한도(300만원) + 취업 취약계층 추가지원(100만원 또는 200만원)

○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예산·법령정보 > 훈령·예규·고시 >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

### <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>

□ 추진배경 :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 도모

□ 주요내용

○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상향 (100만원 → 200만원)

□ 시행일 :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개정안 고시일('25.1.1. 예정)부터 시행 (단,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'24.9.1.부터 시행)

##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(☎ 044-202-7288)

□ 정부가 역량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‘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’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.

\*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

○ 사업주는 정부로부터의 공식 인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, 인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매출상승, 안전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○ 근로자는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, 정부 인정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예산·법령 정보>훈령·예규·고시 “[고시]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”

### <「사업주자격 인정 규정」(고용노동부 고시) 시행>

□ 추진배경 : 사업주자격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·시행

□ 주요내용

○ (인정요건) ▲종목, 검정방법, 합격기준, 응시자격의 체계화 여부, ▲인사 우대 규정 제정 여부, ▲비영리성 여부, ▲검정 운영 인프라 구비 여부, ▲출제·채점·감독 기준 구비 여부 등

○ (인정절차) (기업) 인정 신청 → (인력공단) 서류 요건 확인 → (조사단) 조사 및 인정위원회 보고 → (위원회) 조사 결과 심의 → (인력공단) 인정서 발급

○ (지원내용) ▲인정서 발급, ▲인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, ▲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

□ 시 행 일 : 2024년 12월 4일

**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**  
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(☎ 044-202-7295)

-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, 비용·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을 위해 「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」를 실시합니다.
-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연수를 지원합니다.
- 지역·산업의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우수 선도기술 등에 대한 기술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> HRDK 소식·홍보 > 공지사항 >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모집공고

**<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>**

- 추진배경 : 빈일자리 업종 재직청년 기술연수 지원을 통해 선진기술 습득 훈련 기회 제공
- 주요내용
  - (운영기관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~4호·제6호 대학,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
  - (연수대상)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 재직근로자
  - (연수유형) 국내연수
  - (지원내용) 훈련비,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
  - (추진일정) 운영기관 모집공고(12월) → 사업 설명회(1월) → 운영기관 선발(2월) → 연수생 모집(3월) → 훈련시작(4월)
- 시행일 : 2025년 4월

##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(☎ 044-202-7274)

- 뿌리산업분야 산업수요에 맞춰 적시적기 인력공급이 가능한 뿌리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합니다.
-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 3개 캠퍼스(남인천, 순천, 포항캠퍼스)에 인근 산단과 연계한 훈련분야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
  - 학과, 직종 구분없이 지역 뿌리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포괄하여 탄력적인 주문식 훈련과정을 '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(예정) > 과정안내(예정)

### <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>

- 추진배경 : 뿌리산업 분야 평균 빈 일자리 수는 2.5만개('23.12.)로, 현장의 신속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훈련 플랫폼 확충
- 주요내용
  - 구축 캠퍼스 및 훈련분야: 폴리텍 남인천캠퍼스(기계·금속, 자동차·물류), 폴리텍 순천캠퍼스(철강, 기계, 석유화학), 폴리텍 포항캠퍼스(철강, 기계, 광물·금속),
  - 훈련과정: 지역인자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문식 훈련 형태로 운영  
4주~6개월 등 훈련기간은 훈련내용과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- 시 행 일 : 2025년 1월 1일

##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

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☎ 044-202-7344)

□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**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(ATS)\* 활용 지원 사업**을 실시합니다.

\*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(Applicant Tracking System)

○ 채용 관리 솔루션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,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, 지원 서류 접수, 면접 일정 관리·안내 등 **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민간 서비스**입니다.

\* 주요기능: 채용홈페이지/채용공고문 제작 지원(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), 지원서 관리, 채용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, 합격/불합격 통지,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

○ 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·활용한 중소기업 등\*에는 **ATS 서비스 사용료의 80%(최대 40만원)**를 지원합니다.

\*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

### <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>

□ **추진배경** :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인력·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 채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

□ **주요내용**

○ (지원대상) 채용 관리 솔루션(ATS)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

\*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

○ (지원금액)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%(최대 40만원) 지원

○ (지원내용)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검증된 ATS 서비스를 도입·활용한 이용기업에 사용료 지원

□ **시행일** : 2025년 3월



## 2025년 적용 최저임금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55)

-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,030원으로 인상됩니다.
  -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,240원,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,096,270원(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)입니다.
  -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.
  - 다만,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.
    - \* (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) ·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, ·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
-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,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.
  - 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    - \* ·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, ·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

### <2025년 적용 최저임금>

- 추진배경 :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
- 주요내용
  - 2025년 최저임금액: 시간급 10,030원, 월 환산액 2,096,270원(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)
  -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- 시행일 : 2025년 1월 1일

## 근로자 생활안정자금(융자) 이차보전 지원

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1, 7562)

- '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“근로자 생활안정자금(융자) 이차보전 지원” 제도\*를 시행합니다.
  - \*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
  - (지원대상)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- (지원요건) 혼례 및 영·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
  - (지원한도)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, 중위소득 2/3 이하 근로자\*는 최대 1,000만 원
    - \* 중위소득 2/3 이하 근로자는 '24년 이전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합하여 2,000만 원 한도
  - (이차보전율) 대출금리의 3% 이내\* 지원
    - \* 대출금리의 최저한도를 1.5%로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
  - (상환기간) 1년 거치 3년 또는 4년
- 「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」은 '25년 1월 중 개정하여 발령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.

### <근로자 생활안정자금(융자) 이차보전 지원>

- 추진배경 : 한정된 재원 하에서,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신규 융자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
- 주요내용
  - (지원요건) 혼례 및 영·유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1인 자영업자
  - (지원한도) 500만 원 ~ 1,000만 원 범위
  - (이차보전율) 대출금리의 3% 이내
- 시 행 일 : 「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」 개정안 발령일('25.1월 예정)부터 시행

##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'자녀양육비' 용자종류 신설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8837)

□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종류에 '자녀양육비'가 신설됩니다.

○ 「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」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,

\* (용자 조건) 연리 1.25%, 세대당 2,000만원 한도  
(용자 종류)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(1,000만원 한도)  
주택이전비, 차량구입비(1,500만원 한도)

- 용자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저출생 시대에 유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'자녀양육비'를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.

\* (대상) 용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 
(한도) 1,000만원(자녀 1인당 500만원)

☞ (참고)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> 생활안정자금 >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

### <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'자녀양육비' 용자 종류 신설>

□ 추진배경 : 용자 종류 확대(목적 다양화)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

□ 주요내용

○ (내용)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종류에 '자녀양육비' 신설

○ (대상) 용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

○ (한도) 1,000만원(자녀 1인당 500만원)

□ 시행일 : 2025년 1월 1일

## 「산업재해근로자의 날」 법정기념일 지정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8837)

- 2025년 1월 1일부터 「산업재해근로자의 날」(매년 4월 28일)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.
- 매년 4월 28일을 「산업재해근로자의 날」로 지정하고, 해당 일로부터 1주간을 「산업재해 추모 주간」으로 설정함으로써,
  -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<「산업재해근로자의 날」 법정기념일 지정>

- 추진배경 :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한 「산업재해근로자의 날」 법정기념일 지정
- 주요내용
  - 「산업재해근로자의 날」이 법정기념일(매년 4월 28일)로 지정됨에 따라,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
- 시 행 일 : 2025년 1월 1일

##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·관리 강화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(☎ 044-202-8923)

- '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\*됩니다.

\* 고용노동부 고시,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개정·시행('25.1월)

- '위험성평가 인정'은 중소기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

- (인정기준)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은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, 위험요인 발굴·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이 강화됩니다.

\* ▲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: 50% → 60%, ▲ 구성원의 참여·이해 수준: 20% → 25%

- (사후점검)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하여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확인합니다.

\* 인정사업장의 20% 선정하여 점검 → 모든 인정사업장 점검

- (개선확인) 인정사업장이 현장심사, 사후점검에서 개선이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정보공개>예산·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  
“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(고시) ”

### <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 추진 >

- 추진배경 :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·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
- 주요내용
  - 인정심사 기준 강화(70 → 90점)
  - 모든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실시
  - 인정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,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취소
- 시 행 일 : 2025년 1월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% 인상  
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(☎ 042-202-8938)

-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, 스마트 안전 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.
- '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평균 19% 인상하였으며,
-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지원비율을 현행 40%에서 '26년 100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- \* '24년(40%) → '25년(70%) → '26년(100%)
- 또한,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

<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>

- 추진배경 :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
- 주요내용
 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% 인상
  -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
  -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
- 시행일 : 2025년 1월 1일

##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

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(☎ 044-202-7195)

□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.

○ 역량강화 프로그램(1개월 이상 직업훈련)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\*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\*\*받을 수 있습니다.

\* 빈일자리 업종: 제조업, 물류·운송업, 보건·복지서비스업, 음식점업, 농업, 건설업, 해운업, 수산업,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

\*\*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(최대 6개월, 120만원),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

☞ (참고) 고용행정통합포털(고용24) > 취업지원 > 국민취업지원

### <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>

□ 추진배경 :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 및 청년 취업 기회 확대

□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II유형 청년  
(’24.1.1. 이후 참여, ’25년 취업자)
- (지원규모) ’25년 1.3만명, 228억원
- (지원내용) 직업훈련(1개월 이상)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(월 20만원, 최대 120만원) 및 취업성공수당(40만원) 지원

□ 시 행 일 : 2025년 1월

##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

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(☎ 044-202-7375)

□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**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**을 제공합니다.

○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은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\*와 함께 추가수당\*\*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\* 1대1 상담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유지 여부 등 적성 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통합 지원

\*\*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민취업연계수당(월 20만원, 최대 6개월) 추가 지원

☞ (참고) 고용행정통합포털(고용24) > 취업지원 > 국민취업지원

### <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>

□ 추진배경 :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도전 지원

□ 주요내용

○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,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취업의지 고취

○ 연계 소상공인에게 국민취업연계수당(월 20만원, 최대 6개월) 추가 지원(중기부)

□ 시 행 일 : 2025년 1월




**양식 2**

**「신·구 대비표」**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<p>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(통상임금 80%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 상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상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 중 75% 지급,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5% 사후지급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(통상임금 100%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상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300만원 상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(100%)</p>	<p>고용보험법 시행령 ('25.1.1.)</p>
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(월 통상임금 100%) 상한액: 200만원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(월 통상임금 100%) 상한액: 220만원</p>	<p>고용보험법 시행령 ('25.1.1.)</p>
			<p>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-7476)</p>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「육아지원 3법」 개정 시행	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 - 기간: 1년 - 분할횟수: 2회	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 - 기간: 1년(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,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<b>1년 6개월</b> ) - 분할횟수: <b>3회</b>	남녀고용평등법 · 고용보험법 · 근로기준법 (’25.2.23.)
	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 출산휴가 - 절차: 휴가 청구 - 기간: 10일 - 기한: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- 분할횟수: 1회 - 정부지원: 5일	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 출산휴가 - 절차: 휴가 <b>고지</b> - 기간: <b>20일</b> - 기한: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<b>120일 이내 사용</b> - 분할횟수: <b>3회</b> - 정부지원: <b>20일</b>	
	<input type="checkbox"/> 난임치료휴가 - 기간: 3일(유급 1일) - 정부지원: 없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난임치료휴가 - 기간: <b>6일(유급 2일)</b> - 정부지원: <b>(신설) 2일</b>	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- 7476, 7412, 7471)
	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- 대상 자녀 연령 : 8세(초2) 이하 - 기간: 1년(육아휴직 미 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) - 최소 사용기간: 3개월	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- 대상 자녀 연령 : <b>12세(초6) 이하</b> - 기간: 1년(육아휴직 미 사용 기간 <b>2배 가산 시 최대 3년</b> ) - 최소 사용기간: <b>1개월</b>	
<input type="checkbox"/> 출산전후휴가 - 기간: 90일(다태아 출산 시 120일) - 정부지원: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90일, 대규모 기업 근로자 30일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산전후휴가 - 기간: 90일( <b>미숙아 출산 시 100일</b> , 다태아 출산 시 120일) - 정부지원: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<b>100일</b> , 대규모기업 근로자 <b>40일</b>		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<b>「출산육아기 대체인력, 업무분담지원금」 지원확대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월 80만원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, 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(파견)사용에 대해 월 120만원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,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뉴스소식>기타 “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(예정)”	고용보험법 시행령 ('25.1.1.)
			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(044-202-7474)
<b>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 확대 개편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을 지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○ (유형1)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○ (유형2)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하고,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	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('25.1.1. 예정)
			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(044-202-7441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「상습 임금체불 근절법」 시행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습체불 사업주*에 대해 신용 제재, 정부지원 제한, 공공 입찰 불이익 * (상습체불 사업주)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(퇴직금 제외) 또는 ②5회이상 체불&체불총액 3천 만원(퇴직금 포함)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체불*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*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 개정 「근로기준법」	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(’25.10.23)
		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044-202- 7529)
폭염·한파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명확화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로 하여금 ‘폭염·한파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’를 예방 하도록 의무를 명확화	산업안전 보건법 (’25.6.1.)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(044-202- 8891)
‘중장년 경력지원제’ 신설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 가능성을 제고 ○ (지원내용) - (참여자) 월 최대 150만원 - (참여기업) 월 최대 40만원	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(’22.6.10.)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 력정책과 (044-202- 7459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'도약지원형' 신설	□ 표준사업장 무상지원에 따른 고용의무기간(7년) 종료에도 불구하고, 지원 한도의 제약으로 추가 지원 불가하여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추가 채용 등에 어려움이 있음	□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 (10억) 전액 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를 통해 추가 5억원을 지원하여 노후 시설·장비를 수리·개선하고,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함	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('25.1. 예정)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5)
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	□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 근로자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100만원	□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 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예산·법령 정보 > 훈련·예규·고시 >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	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('25.1.1. 예정)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(044-202-7318)
「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」 도입	< 신 규 >	□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주 자격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고 자격증 등에 인정마크 기재 허용 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보공개>예산·법령 정보> 훈령·예규·고시 “[고시] 사업주 자격 인정 규정”	「사업주자격 인정 규정」 ('24.12.4.)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(044-202-7288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규 도입 <input type="checkbox"/> (운영기관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~4호제6호 대학,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(연수대상)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 <input type="checkbox"/> (연수유형) 국내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원내용) 훈련비,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 <a href="#">☞ (참고)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&gt; HRDK 소식·홍보 &gt; 공지사항 &gt;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모집공고</a>	고용보험법 (’24.5.17.) 고용보험법 시행령 (’24.7.1.)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(’24.1.1.)
			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 원과 (044-202- 7295)
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뿌리산업분야 주문식 훈련을 위한 폴리텍 교육센터(뿌리 산업교육센터) 3개소 구축  <a href="#">☞ (참고)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&gt; 과정안내(예정)</a>	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(’23.7.4.)
			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과 (044-202- 7274)
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등이 민간의 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·활용한 경우 사용료의 80% 지원 (최대 40만원)	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’25.3. 예정)
			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(044-202- 7344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2025년 적용 최저임금	<input type="checkbox"/> 2024년 최저임금: 시간급 9,860원 월 환산액 2,060,740원 (주 40시간 기준)	<input type="checkbox"/> 2025년 최저임금: 시간급 10,030원 월 환산액 2,096,270원 (주 40시간 기준)  <input type="checkbox"/>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 예규·고시	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(‘25.1.1)
		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044-202- 7555)
근로자 생활안정자금(용자) 이차보전 지원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차보전 도입 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원대상)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원요건) 혼례, 영·유아 자녀 양육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원한도) 500만 원 ~ 1,000만 원 범위 <input type="checkbox"/> (이차보전율) 대출금리의 3% 이내	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(‘25.1월)
		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044-202- 7561, 7562)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'자녀양육비' 용자종류 신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용자 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, 주택이전비, 차량구입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용자 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, 주택이전비, 차량구입비, 자녀양육비  <input type="checkbox"/> (참고) 근로복지공단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 > 생활 안정자금 > 산재근로자생활 안정자금	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(‘25.1.1.)
			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(044-202- 8837)
「산업재해근로자의 날」 법정기념일 지정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,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함	산업재해 보상보험법 (‘25.1.1.)
			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(044-202- 8837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심사·관리 강화</b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정기준 70점 이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항목 및 가중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%</li> <li>○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%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대상: 20% 범위 내 실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정취소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인정</li> <li>○ 중대재해 발생</li> <li>○ 중대산업재해</li> <li>○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</li> <li>○ 사후심사 결과 인정기준 점수 미충족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정기준 90점 이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항목 및 가중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60%</li> <li>○ 구성원의 참여·이해 수준 25%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대상: 모든 사업장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정취소 사유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후점검 거부</li> <li>○ 심사·점검 시 지적사항 미이행</li> </ul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&gt; 정보공개&gt;예산·법령정보&gt; 훈령·예규·고시&gt;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(고시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(’25.1.)</p>
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원과 (044-202- -8923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% 인상</b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시 별표1에 따라 ‘13년 인상된 계상 요율 적용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 대비 평균 19% 상승 폭을 적용한 별표1 계상요율표 인상</p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 정보공개&gt;법령정보&gt;입법·행정예고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’25.1.1.)</p>
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 방정책과 (044-202- 8938)</p>

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(국민취업지원제도)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○ (대상)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II유형 청년 ○ (지원 내용) 훈련참여수당(월 20만원, 최대 120만원) 및 취업성공수당(40만원) 지원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('25.1.1.)
			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(044-202-7195)
(국민취업지원제도)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	< 신 규 >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○ (대상)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 ○ (지원 내용)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(고용부) 및 국민취업연계수당 지원(중기부, 월 20만원, 최대 6개월)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('25.1.1.)
			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(044-202-7375)